

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
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	지원대상자와의 관계	본인
	휴대전화번호				전자우편주소	
	안내방법	[] 문자메시지서비스 [] 전자우편 [] 기타()				

지원대상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세대주와의 관계	
	휴대전화번호				전자우편주소	
	안내방법	[] 문자메시지서비스 [] 전자우편 [] 기타()				

가족사항	세대주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가구원별 안내방법
						[] 문자메시지서비스 [] 전자우편 [] 기타()
						[] 문자메시지서비스 [] 전자우편 [] 기타()
						[] 문자메시지서비스 [] 전자우편 [] 기타()
						[] 문자메시지서비스 [] 전자우편 [] 기타()
						[] 문자메시지서비스 [] 전자우편 [] 기타()
						[] 문자메시지서비스 [] 전자우편 [] 기타()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						동의 (☐ 표시합니다)
1. 개인정보 활용 목적: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이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 2.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 요청 범위: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수급가능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포함합니다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3.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), 5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.						[]

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합니다.

년월일

신청인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·보장기관의 장 귀하

유의사항
1. 맞춤형 급여 안내는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제도로,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 2.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이고, 신청인이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. 3.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하여 안내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이므로, 실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